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로구역 면적은 시·도 조례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까지 설정 가능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,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. 이에,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·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 . . . ~ .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가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사업시행구역”을 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, 사업시행구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)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노후·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(街路區域)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	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가로주택정비사업: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	2. ----- ----- ----- --
가.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. 다만, <u>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1) 및 2)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 미만</u>	가. ----- ----- -. ---- <u>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, 사업시행구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으로 할 수 있다. 1) ~ 3) (생략) 나.·다. (생략) 3.·4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-----. 1) ~ 3) (현행과 같음) 나.·다. (현행과 같음) 3.·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944